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76th January 2015

- ▶ WHERE IS GRACE CHANG?:
RESET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2014 년 주요 관세 ISSUE
..... 3
- ▶ FTA NEWS:
한-아세안 FTA 에서 꼭 알아야 할
'상호대응세율'
..... 5
- ▶ VOICES FROM THE FIELDS: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 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9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 12



Happy 2015 New Yea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장승희
대표 관세사

January, 1월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Janus라는 로마신화 속의 인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는 처음과 끝,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1월의 문을 들어서며 우리는 지난 한 해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짹짹 흘러가던 시간이 자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reset하고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의 과거로 간 주인공인 마티(Marty)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힘없고 약하여 놀림만 받고 있는 틴에이저인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인에게의 데이트 신청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마티는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bully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머니와의 첫 데이트를 위해 담대하게 맞서도록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왔을 때 떠나기 전과 달라진 현실에 마주칩니다.

힘없고 약한 가장으로 인해 가난하고 우울했던 가정상황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담대하게 어려움을 극복해낸 아버지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과거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시점으로 돌아가 바로잡아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4년 4월 15일 오후로 돌아가 세월호가 출항하지 못하게 하였다더라면...? 아니 4월 16일 오전으로 돌아가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구조시켰더라면...?

안녕들 하시기를 기원하며 희망과 긍정으로 시작한 2014년은 참으로 안녕하지 못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새해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새로운 해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영화에서처럼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가 Reset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Reset 하고 초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Voices From The Fields는 **서울대학교 조보형 교수**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라는 제목의 단상입니다. 녹색 성장을 위해서도 Reset은 필요합니다.

늘 초심으로 돌아가는 후회 없는 2015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
2014년 주요관세 ISSUE

FTA News-
한-아세안 FTA에서 꼭
알아야 할 '상호대응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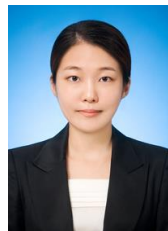
Voices From The Fields-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RULINGS @
수입자가 수출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
료의 관세평가상 처리 방안



이동현 관세사
(dhlee@customsservice.co.kr)



김혜란 관세사
(hrkim@customsservice.co.kr)



조보형 교수
(bhcho@snu.ac.kr)



유입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이동현 관세사
(leedh@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원산지 관리자
 - FTA 컨설팅 경력다수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컨설팅 1팀
 - FTA 원산지 컨설팅
 - 원산지관리사

- PROFILE
- 서울대학교
 -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전력연구소 소장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컨설팅 경력다수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컨설팅 2팀
 - FTA 원산지 컨설팅

Cover
 Story

2014년 주요 관세 ISSUE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고 벌써 2015년 새해가 밝았다. 2014년은 관세무역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해로서 올 한해 동안의 주요 관세무역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

2014년 11월 10일 한-중 양국 정상은 FTA 협상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고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지난해 기준 총 수출액 26%, 수입액 16%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서 이번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우 평균 9.4%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과 각종 비관세조치로 인해 우리 수출입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FTA를 통하여 관세율 절감뿐 아니라 48시간 내 통관 원칙,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절차 도입 등을 비롯한 각종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대중국 교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한편 우려됐던 농수산물 관련하여 정부는 쌀을 비롯한 고추, 마늘, 소, 돼지고기 등 총 610여 개의 품목이 양허 제외되었고 수입액 기준 40%의 자유화에 합의함으로써 여타 FTA 협상에 비해 최저 수준의 개방에 그친 것으로 밝혔다.

FTA, AEO, MRA 등 국제협력 확대

2014년도에는 한중 FTA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와의 FTA, AEO, MRA 등 국제협력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한-호주(12월), 한-캐나다(15년 1월) FTA가 정식 발효되었고 뉴질랜드(11월), 베트남(12월)과의 FTA 협상이 정식 타결되어 국회 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렇듯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에 따라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의 시장진출 확대와 원유, 유연탄 등 에너지 및 자원 수입이 많은 호주·캐나다로부터의 안정적 자원 확보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4월에는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약(MRA)이 완전히행되었고 또한 멕시코와의 MRA 협상이 체결됨으로써 양국의 성실 무역업체(AEO)가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검사 축소, 서류검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직접구매 물량의 급증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시장규모는 2001년 1300만달러에서 2013년 10억달러로 연평균 43.6% 성장해왔으며, 올해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인터넷 쇼핑물품이 약 5백만건 4억 8천만불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러한 상황에 맞춰 관세청은 해외직구 수입에 대하여 목록통관 대상물품 확대 및 관세면제 범위 확대 등 관세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목록통관이란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대상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¹ 관세청 보도자료 (2014.5.20)

대하여 정식수입통관 절차 없이 100 불(미국발 200 불)까지 관세면제로 수입이 가능한 제도를 말하며 기존에는 의류, 신발류, 가구 등 6 개 물품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 인형, 시계, 소형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의 물품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러한 목록통관 대상 이외 품목의 경우에도 15 만원까지 면세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한 구매 경로를 다변화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 완화 혜택은 자가소비용 물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판매용임에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경우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물품이라도 목록통관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수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관세 조사/심사 기초의 지속

2013 년 이후 우리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에 따라 관세청 및 일선세관의 관세 조사/심사 업무가 급증한 바 있었으며 이러한 기초는 2014 년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올해 초 정부에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작년 징수실적 대비 4% 증가한 68 조 1 천억 원으로 세수목표를 보고하였으며 이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쟁송조직을 확대하고 관세조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014 년 한해 동안 관세심사/조사 업무가 활발히 이어졌으며 특히 관세쟁송에 역량을 집중하여 1 분기에는 승소율이 약 94%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실적 확보에 대한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일선 기업에서는 수출입통관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철저한 내부진단 및 전문가 조력을 활용하여 수출입 법규준수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개혁 기초에 따른 관세행정 변화

올해 정부는 기업투자의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철폐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관세청에서도 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2014 년 하반기 관세행정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수출입 기업의 FTA 원산지검증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수출 기업의 AEO 공인기준을 완화 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성실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기간 자동갱신 및 세액 수정신고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등을 통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김포-인천공항간 일관운송절차 도입 및 보세운송절차 간소화 등 수출입 물류제도가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출입규제기관 협업을 통한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 정비, 수출신고 정정 간소화, 기업심사 결과 수정신고업체 행정제재 완화 등 수출입통관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일선 수출입 기업과 관련된 관세행정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활용할 경우 기업의 수출입통관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년에는 FTA 등 많은 국제협정의 체결 및 해외직접구매의 큰 폭 증가, 관세 심사/조사 기초의 지속, 규제개혁에 따른 관세행정의 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이렇듯 국제무역환경은 해마다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선 기업들의 철저한 내부업무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내부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세/무역 전문가인 관세사의 조력을 통하여 수출입통관 및 무역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2015 년에도 우리 기업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헌

dhlee@customsservice.co.kr

한-아세안 FTA 에서 꼭 알아야 할 '상호대응세율'

1. 개요

FTA 는 계약상대국끼리 협정문에 따라 양허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협정이지만, 한-아세안 FTA 협정은 타 협정과 다른 특징이 있다. 한-아세안 FTA 의 경우 회원국에 동일하게 양허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의 경우 해당 품목이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상호대응세율

(1)개념

상호대응세율제도란 FTA 계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 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수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해놓은 품목의 경우 수입국에서는 양허대상품목이라 하더라도 일반물품의 양허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인 경우 수입상대국의 일반품목군 관세 철폐일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물품인지 또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8 년 9 월 10 일부터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일반품목과 민감품목

한-아세안 FTA 의 양허유형은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구분되며,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뉜다. 자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각각 시한에 따라 차이를 두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되는 것이다. 민감품목은 나라마다 각각 따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2 에서 각 나라별로 지정한 민감품목군을 확인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1 의 제 6 항에 따르면, 수출국가에서 일반품목군인 경우에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양허스케줄에 따라 관세 양허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국에서 일반품목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국에서는 관세양허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된다.

부속서 2 의 제 7 항에서는 상호대응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상호대응세율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MFN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 ② 수출당사국의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수출당사국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우리나라는 ①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품목으로 FTA 특례법시행령 별표 3 의 2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②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3. 예시

우리나라는 1602.32-1010(삼계탕)을 초민감품목(그룹 B)로 지정하였으며, 베트남의 경우 해당품은 일반품목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출국(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군으로 지정한 물품이 수입국(베트남)에서는 일반품목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호대응세율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삼계탕은 (2014 년 기준) 기본세율 33%, MFN 세율 22%, 한-아세안 FTA 세율 15%이지만, 한국산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양허품목임에도 한-아세안 FTA 에 따라 특혜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MFN 세율 22%가 적용되는 것이다.

4. 주의사항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이 민감품목군에 해당한다고 해서 수입국에서 반드시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호대응으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거나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협정문상에서 해당 품목이 수출국의 민감품목군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민감품목군인 경우 해당 수입국가에서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란

hrkim@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요금에 기인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는 매해 반복되는 국민의 초 관심사인 전력 대란 문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에 궁극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 30년 전 KWh 당 55원 이었던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요사이에는 평균 90원 정도가 되었다. 다른 물가와 비교하면 그간 전기요금이 얼마나 낮게 유지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고 유럽연합 평균 전기 값에 절반도 안 되는 국내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전력 수요는 견잡을 수 없이 증가했고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전력 사용량이 우리 보다 소득이 2배 이상 되는 일본, 독일, 프랑스나 영국보다 더 많아진 것은 벌써 오래 전 일이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산업용 전기 용광로에서부터 건물의 전기 공조시스템, 통계를 잡기조차 힘든 개인 난방(전기장판 등), 그리고 한 겨울에도 여름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난방 등 비효율, 비상식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예는 수없이 많다. 전기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소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각종 규제는 그 성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려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1960년대에 50만 KW 였던 우리나라 발전설비 용량이 지금은 8000만 KW를 넘어섰으니 무려 160배가 늘어난 셈이다.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발전이 타당하나 환경 및 안전 문제로 감축 시키려는 노력이 지구촌의 흐름이며 우리 정부도 근간에 원자력 비중을 낮추려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립되어 있는 좁은 국토는 발전소와 송전탑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또한 발전설비 및

송전탑 건설은 사회적 문제로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요금제도가 개선되어야만 한다. 값싼 전기요금이 국가발전에도움이 되던 시절은 지났다.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전력 수요가 늘어날 때 전기요금도 함께 올라가는 피크타임 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합리적인 전기 요금제도는 앞서 이야기한 전력낭비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문제의 뿌리는 전기의 정치 변수화인데 전력 공급 대책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한다.

화석에너지 고갈 및 환경 문제를 대비하고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ESS) 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하여 지난 정부부터 “녹색성장”이란 기치아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신재생 발전 단가가 현재 기존 전기요금의 평균 10 배가 넘기 때문에 투자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 녹색산업은 성장하지 못하였다. 합리적인 전기요금은 신재생 발전 및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의 정보통신기술 및 전력전자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 (ESS)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이는 피크 전력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CO2 배출권 등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 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교수 조 보 형
(bhcho@snu.ac.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관세 과다납부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 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의 갱신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제22조제1항)

내국세의 경우 5억 이상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액인 관세 채권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나.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 마련 (제33조제2항 신설)

최근 농산물 등의 지속되는 저가신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동종·동

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의 경우에도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제37조제3항 신설)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마

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

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제도 도입(제37조의2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함.

마.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제38조의3제2항 및 제38조의4제1항)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함.

바.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 도입(제86조 및 제87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신설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사.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제96조제2항 신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 초과물품 반입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진신고의 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別送品)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아.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도 도입(제116조의3 신설)

내국세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가 없는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해서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제도 도입(제176조의2)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만료 시 신규 특허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특허의 갱신을 허용하고, 해당 특허의 갱신 시에는 신규 특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차.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제도 도입(제2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화물운송 주선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시 해당 업무를 이용하여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세운송업자 등의 지속적 경제활동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제도를 도입함.

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40조의4 신설)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등을 추진할 추진체계로서 국가별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원활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무역원활화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제241조제5항)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여행자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여행자 등에 대한 가산세율은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파.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법령준수도 등의 평가 및 지원 제도 도입(제255의2제7항 신설)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정

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하.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 연기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를 현행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3.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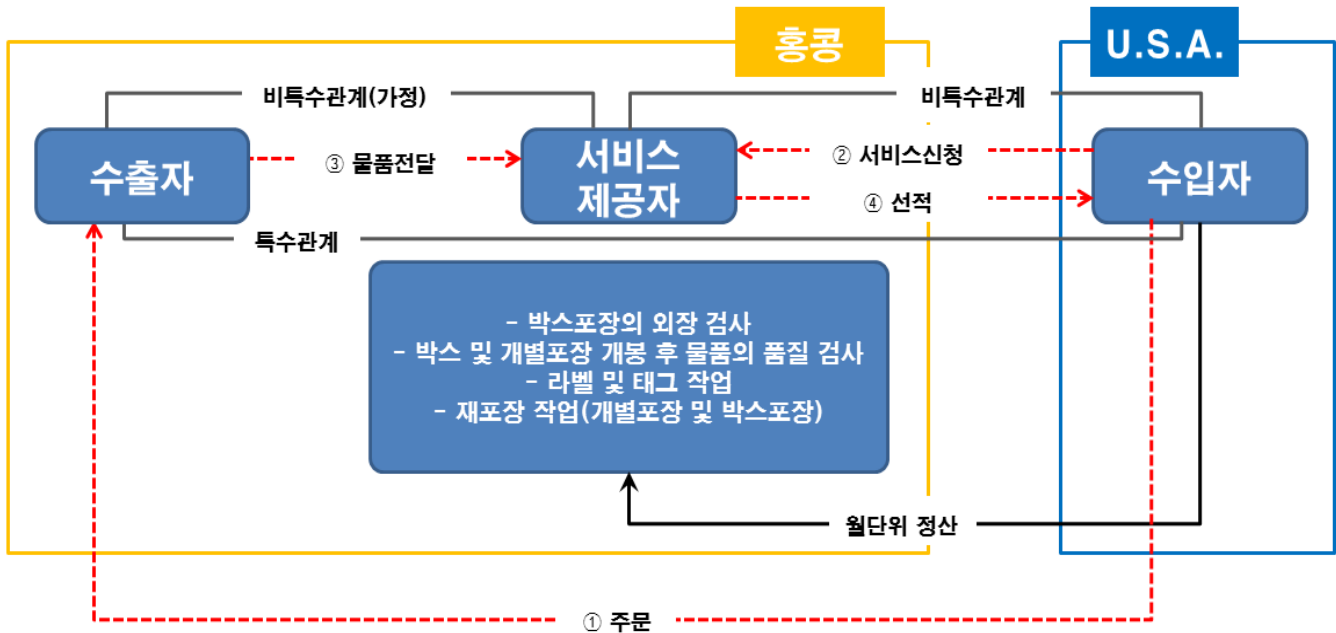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66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수입자가 수출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의 관세평가상 처리방안 (HQ H212283, 2014.06.19)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협정에서 규정하는 가산요소(add-back items)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가산요소를 조정하는 이유는,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지 못한 별도의 지불 금액이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물품의 가격을 함께 구성하기 때문이다.



□ 거래사실(FACTS)

수입자는 홍콩의 수출자로부터 의류 등의 상품을 주문하고 그와 동시에 구매한 물품의 검사를 위해 홍콩 현지에서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신청을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상품을 물류창고에 입고하고 1 차적으로 박스포장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박스포장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서비스제공자는 박스를 개봉하고 2 차적으로 개별포장 또한 제거 후 내용물의 수량, 스타일, 소재, 색상, 사이즈 등을 물품명세서와 대조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면 수출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품질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제조국 라벨, 관리 안내 라벨 등의 라벨 작업 및 태그 작업을 수행 후, 개별포장 및 박스포장을 하여 수입자의 선적 요청이 있을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 **쟁점(Issue)**

수입자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대금은 실제지급가격 또는 가산요소로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 물품에 관련하여 지급된 포장비, 판매수수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및 사후귀속이익을 포함한 법정가산금액을 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 U.S.C. §1401a(b)(1)(A)-(E))

1. 수입물품의 외장 및 내장에 대한 검사비용이 거래가격에 해당하는가?

HQ W563469(2006.03.21) 및 HQ 543365(1984.11.01)에서 CBP 는 수입자에 의하여 수출자와 비특수관계인 제 3 자가 수행한 검사비용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대가는 순전히 검사비용에 대한 대가일 뿐 수출자 또는 수출자와 특수관계인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검사 비용이 물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치는 디자인이나 개발과 무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라벨 및 태그 작업에 대해 지급한 비용이 거래가격에 해당하는가?

협정에서 정하는 가산요소 중 “생산지원비”란 구매자에 의해 공급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등”을 포함한다.(19 U.S.C. §1401a(h)(1)(A)(i)) HQ 543056(1983.10.19)에서 CBP 는 무상으로 공급된 섬유재의 라벨을 생산지원비로 간주하여 과세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건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한 라벨 및 태그작업에 대한 대가로 수입자가 지급한 비용은 생산지원비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재포장에 대해 지급한 비용이 거래가격에 해당

하는가?

“구매자가 지급하는 포장비용”은 협정에서 정하는 가산요소의 일부를 구성한다. (19 U.S.C. §1401a(b)(1)(A)) 여기서 포장비용이란 선적준비 상태로 포장하기 위해 소요된 재료비 및 인건비를 의미한다. (19 U.S.C. §1401a(h)(3)) CBP 는 HQ 546690 (1997.06.18)에서 인건비를 포함하여 상자의 개봉부터 재포장, 재봉인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요소인 포장비로 간주하여 과세결정한 바 있다. 본 건에서도 수입물품의 검사를 위해 박스를 개봉하고 검사를 마친 후 재포장하는 비용은 선적준비를 위한 포장비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 **결정(Holding)**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수행된 검사 용역에 대한 대가는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수출자의 이익을 위해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한 아니기에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협정에서 정하는 가산요소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라벨 및 태그 작업과 포장의 개봉 및 재포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은 각각 생산지원비와 포장비라는 가산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작성자 의견**

본 건에서 검사비용에 대한 대가가 수입물품의 간접지급액이 아니라는 결정은 “가산요소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on the buyer’s own account)은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평가협정 제 1 조 주해(Note to Article 1) 2 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사 용역 비용은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며, 처음부터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간접지급액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는 구매수수료가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동현

(leedh@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Shinhan**